

제301회 임시회
2011. 6. 15(수)~6.16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
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1년 6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6월 8일

3. 제안이유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이관·조정에 관한 관계부처 합의로 농촌주택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어 농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이 정비되었고
- 농이촌주택개발사업 시행지침 중 자금의 용자 및 지원조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용자금 및 보조조건(안 제5조제3항)
 - 이율을 정하는 부처장관 변경(행정자치부→농림식품수산부)
 - 상환방법의 변경(5년거치 15년 체증상환→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농촌주택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어 농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이 정비되었고
- 농이촌주택개발사업 시행지침 중 자금의 용자 및 지원조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